

발 간 등 록 번 호

34-9761044-210011-14



청소년용

#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 CONTENTS

## 01

### 긴장 반, 설렘 반 나는 새내기 유권자!

---

- 1. '유권자'라는 이름 06
- 2. 소중한 '한 표'의 가치 08
- 3. 투표로 만드는 세상 10

## 02

### 선거, 이렇게 한다!

---

- 1.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16
- 2.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 20
- 3. 알쏭달쏭 투표용지 23
- 4. 투표, 어렵지 않아요! 26
- 5. 개표와 당선인 결정 33

## 03

# 선거운동, 나도 할 수 있다!

---

- 1. 선거운동이란? 42
- 2.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44
- 3.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 46

## 04

# 참여하는 유권자가 되다!

---


- 1. 우리가 꿈꾸는 세상 54
- 2. 선거정보 알아보기 56
- 3. 미디어와 선거정보 59
- 4. 정당·후보자 분석하기 62
- 5.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선거문화 66



# 01

## 긴장 반, 설렘 반 나는 새내기 유권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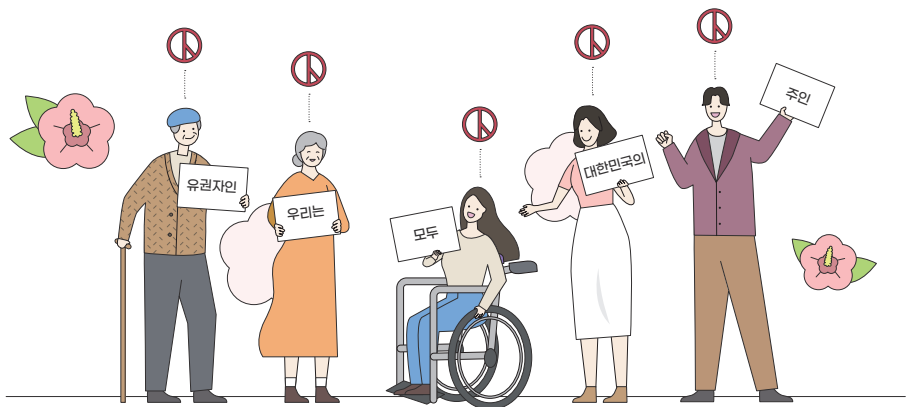
- |   |    |
|---|----|
| 1. '유권자'라는 이름   | 06 |
| 2. 소중한 '한 표'의 가치  | 08 |
| 3. 투표로 만드는 세상   | 10 |
|  마무리하기 | 12 |

## 1. '유권자'라는 이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꿈꾸는 세상에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부터 들겠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뀌나갈 수 있다고, 적어도 바뀌나가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모두 정치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방법과 과정을 의미합니다.

정치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대의민주주의의 출발이자 가장 핵심이 되는 선거를 통해 우리는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권자는 대한민국이라는 운명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CHECK

#### 선거권 연령 기준

선거권을 갖는 유권자는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2024. 4. 10. 국회의원선거에서는 2006. 4. 11.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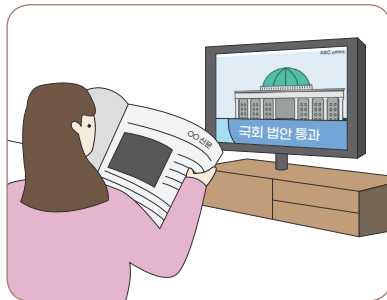
우리나라는 2020년 실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부터 만 18세가 된 청소년에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를 결정하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다고 진짜 유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지한 의견이 선거를 통해 국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 우리는 진정한 유권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고민하고 행동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유권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노력**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우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갖습니다.



토론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기릅니다.



선거에 참여해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합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하면서 나와 내 주변에 관심을 갖는 것이 유권자로서의 첫 걸음입니다. 또한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자세로 토론하고 설득하며,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도 유권자의 교양을 쌓는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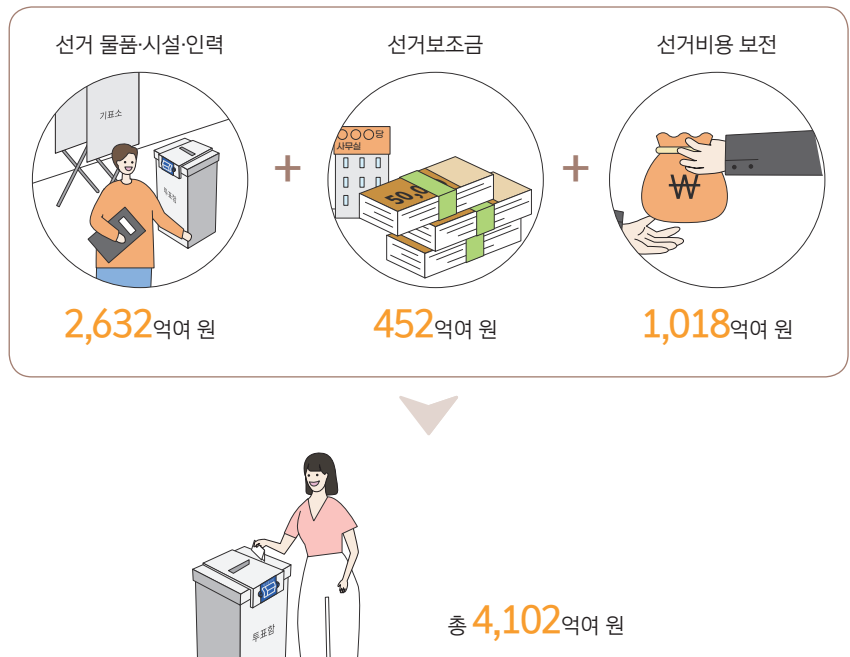
곧 만 18세가 되는 16, 17세 청소년들도 예비 유권자로서 진정한 유권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보세요.

## 2. 소중한 ‘한 표’의 가치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과연 이 소중한 권리 행사를 금액으로 환산할 수는 있을까요? 이러한 생각은 어쩌면 무의미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에 얼마나 많은 돈이 드는지 알면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한 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느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투표·개표 등 선거관리를 위한 수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엄청난 선거물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8,700만여 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하고, 3,508개의 사전투표소, 14,330개의 투표소, 251개의 개표소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 TV광고와 같은 선거홍보 비용과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보조금, 선거비용 보전 금액 등을 합치면 총 비용은 4,102억여 원이었습니다.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비용



#### ✓ CHECK

#### 선거비용 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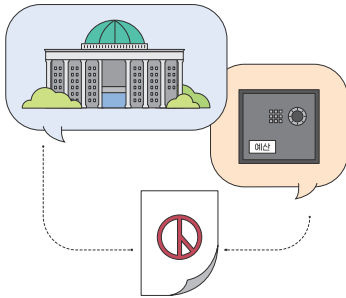
- 선거 후 일정한 기준 이상의 표를 획득한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이유는 유능한 정치인들의 정치 참여가 자금력에 따라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헌법 제116조 제2항(선거공영제)].



그렇다면 선거를 치르기 위해 쓰는 돈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네, 맞습니다. 모두 우리의 세금입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유권자 한 명당 투표비용은 적어 보이지만,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 금액은 커집니다. 그리고 투표하지 않으면 그 돈은 그냥 버려지게 됩니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기준)

선거 예산(㉠)	투표율	유권자 수(㉡)	유권자 한 명의 투표 비용 (㉠/㉡)	버려지는 세금 (㉠의 33.8%)
4,102억 원	66.2%	43,994,247명	9,300원	<b>1,386억 원</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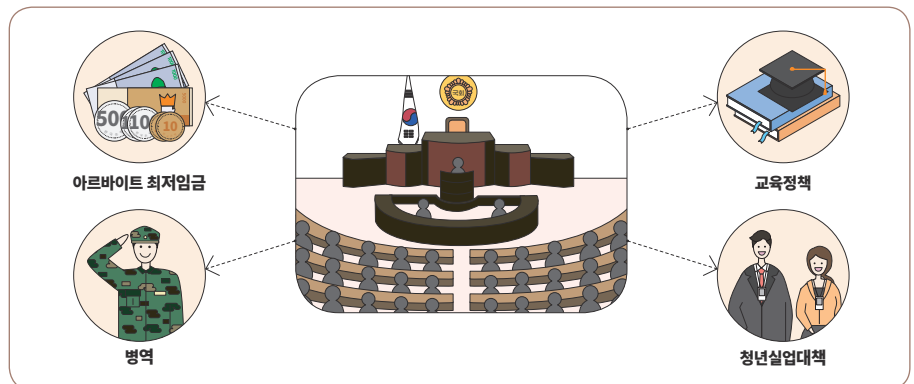
선거를 통해 선택된 대표자는 우리나라의 재정을 운영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투표를 통해 파생되는 가치를 또 다른 사례를 통해 살펴볼까요? 2020년 우리나라 예산은 512조 3천억 원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이 4년의 임기 동안 운영해야 할 재정규모는 2,049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셈이죠. 이를 전체 유권자 수인 43,994,247명으로 나누면 유권자 한 명에서 파생되는 투표가치는 약 4,7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대표를 잘못 선택하거나 투표에 참여하지 않아 자질 없는 대표가 선택된다면 그만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계산법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한 표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조금이나마 느껴지시나요?

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이 모인 국회, 그리고 그들이 소속된 정당에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어떤 법을 만드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투표의 가치는 훨씬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교육 정책이나 청소년 보호 정책 등을 떠올리며 투표의 가치를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내 한 표의 가치와 크기는 바로 여러분이 결정짓습니다. ”



### 3. 투표로 만드는 세상

선거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라고 생각합니다. ‘나 하나쯤 투표하지 않는다고 선거 결과에 무슨 영향이 있겠어?’, ‘내가 투표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투표하지 않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거일을 쉬는 날, 놀러가는 날로 오해하고 있다면 ‘결과를 바꾼 한 표’에 관한 사례들을 보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봅시다.

#### 한 표가 바꾼 투표 결과



역대 국회의원선거 중 최소 표차는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경기도 광주군선거구에서의 3표 차이였습니다. 2008년 강원도 고성군수 보궐선거에서는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했습니다. 선거 규모가 작은 지방선거에서는 한 표 차이로 당선인이 결정된 사례가 더 많은데요. 1995년 제1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6곳,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2곳, 2002년 제3회 동시지방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4곳, 2006년 제4회 동시지방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충북 충주시에서는 1표 차이로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여러분이 당사자였다면 심정이 어땠을까요? 숨 죽이고 지켜보는 개표 현장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나요?

“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는 단지 ‘나 하나쯤이야’가 아닙니다. ”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도,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도,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는 결정타가 되기도 합니다. ‘나 하나쯤이야’라고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표가 언제, 어떻게 삶을 바꿀지 모릅니다.

투표 참여를 통해 국가 운영을 책임지는 대표를 내 손으로 선출하고 국가 정책에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입장을 대변해 줄 후보자나 정당에게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선거와 정치에 무관심하다면 누구도 내 생각에 귀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교육정책, 미세먼지 대책, 대체복무제, 청년실업 등 청소년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 우리의 한 표,  
대한민국의 변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선거 관심도 및  
투표 관련  
유권자 인식조사 결과**  
(단위: %)

선거 관심도 (29세 이하)	투표 의향 (29세 이하)	투표하지 않은 주요 이유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어서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개인적인 일/출근 등으로	후보자에 대해 잘 몰라서	코로나19 때문에 불안해서	기타	모름/ 무응답
72.7	81.1	34.6	7.4	25.5	16.8	2.2	3.8	8.9 <sup>주)</sup>	-

주) 기타값에 '흥미를 끌만한 정책이나 이슈가 없어서', '상호비방, 돈 선거 등 선거운동에 실망해서', '투표를 해도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서' 보기 응답이 포함됨

(출처: 제20대 대통령선거에 관한 유권자 인식조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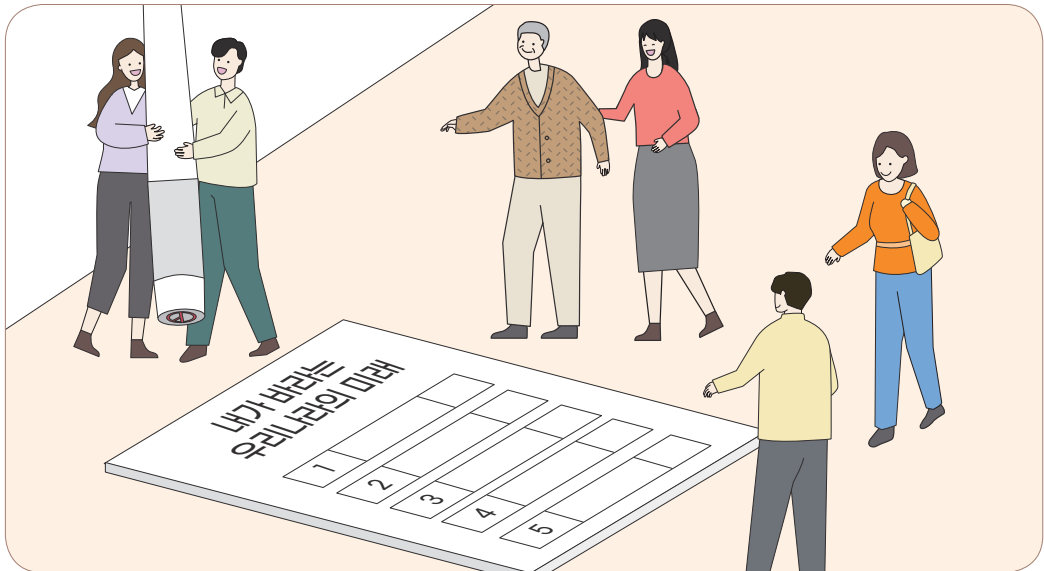
## 정리하기

'유권자'란?	선거에서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선거권 연령 기준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사람	
진정한 유권자가 되기 위한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리 사회의 문제에 관심 가지기</li> <li>▪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자세 가지기</li> <li>▪ 토론을 통해 내 생각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능력 기르기</li> <li>▪ 선거에 참여해 유권자의 권리 행사하기</li> </ul>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투입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 물품·시설·인력 2,632억 원</li> <li>▪ 선거보조금 452억 원</li> <li>▪ 선거비용 보전 1,018억 원</li> </ul>	<div style="text-align: center;"> <p>총 선거관리경비</p> <p>≈</p> <p>약 4,102억 원</p> </div>
투표를 통해 파생되는 가치	<p><b>경제적 가치</b>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운영하게 될 재정규모 2,049조 2천억 원) ÷ (유권자 수 43,994,247명) = 한 표의 파생 가치 약 4,700만 원</p> <p><b>사회적 가치</b> 선거로 어떤 대표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법과 정책이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음.</p>	
투표 참여가 중요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체 유권자의 다양한 생각이 선거를 통해 표출될 수 있기 때문</li> <li>▪ 유권자의 의견을 국가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li> </ul>	
청소년의 투표 참여가 중요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복지, 환경, 국방, 노동 등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영역이 많기 때문</li> </ul>	

## 확인하기

- 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가 되면 투표를 할 수 있다. (O/X)
- 어떤 대표를 선출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O/X)
- 우리나라 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가 있다. (O/X)
- 투표 참여는 유권자가 원하는 을 실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생각하기



- 1 — 선거권 행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유권자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2 — 투표에 참여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 3 — 투표를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확인하기 정답 O, O, O, 정책



# 02

## 선거, 이렇게 한다!

---

- |                    |    |
|--------------------|----|
| 1.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 16 |
| 2. 선거과정 한눈에 보기     | 20 |
| 3. 알쏭달쏭 투표용지       | 23 |
| 4. 투표, 어렵지 않아요!    | 26 |
| 5. 개표와 당선인 결정      | 33 |
| 📍 마무리하기            | 36 |

# 02

# 선거, 이렇게 한다!

## 1.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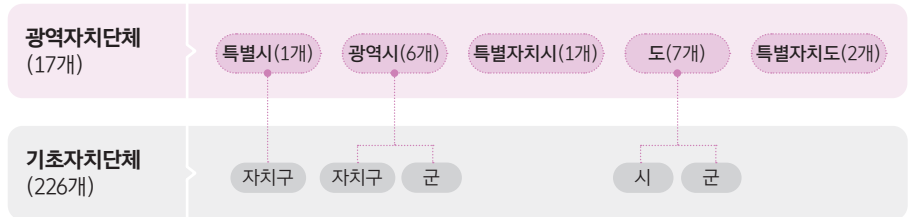
우리는 어떤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하는데요. 선거권 연령이 하향되어 더 많은 청소년이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으니, 교육감 후보자들은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겠죠?

선거는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지방선거), 50일(국회의원선거), 70일(대통령선거)을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임기 차이로 인해 대부분 교차해서 선거를 실시하지만 같은 해에 임기가 끝나면 한 해에 두 개의 선거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는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지방선거(6월 1일)를 같은 해에 실시하였습니다.

한편,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사망·당선무효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실시)하며 새로운 당선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포함된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면 재·보궐선거일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청소년들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강원특별자치도(2023.6.11.시행)의 경우 기존 기초자치단체(시·군)를 유지하며, 2024.1.18. 전북특별자치도가 추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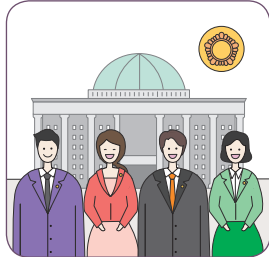
지방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동시지방선거'라고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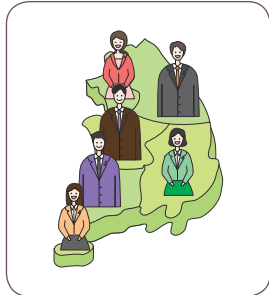
## 공직선거의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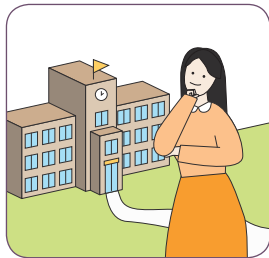
대통령선거	
선거일	선출 단위
2027. 3. 3. (임기 5년)	전국
	임기가 끝나기 전 70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선출 단위
2024. 4. 10. (임기 4년)	지역구의원: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의원: 전국
	임기가 끝나기 전 50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지방선거		
선거일	선출 단위	
2026. 6. 3. (임기 4년)	지방자치 단체장	광역자치단체장: 시·도* 기초자치단체장: 자치구**·시·군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의원: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의원: 시·도 단위 / 자치구·시·군
	임기가 끝나기 전 30일을 기준으로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	



교육감선거	
선거일	선출 단위
2026. 6. 3. (임기 4년)	시·도
	교육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

\* '시·도'에서 '시'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말하며, '도'는 특별자치도를 포함합니다.

\*\* '자치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있고(예: 종로구), 구청장은 선출직입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는 기초자치단체인 '시'에 있고(예: 수원시 팔달구), 구청장은 임명직입니다.

### ☑ CHECK

#### 지방선거로 선출되는 대표자

교육감선거도  
지방선거와 같은 날  
실시해요!

#### 지방자치단체장

- 광역자치단체장: 시·도지사
- 기초자치단체장: 자치구청장·시장·군수

#### 지방의회의원

- 지역구의원: 광역의회의원(시·도의원) / 기초의회의원(자치구·시·군의원)
- 비례대표의원: 비례대표광역의회의원(시·도의원)  
비례대표기초의회의원(자치구·시·군의원)

✔ 여기서 잠깐!

**비례대표제란 무엇인가요?**

한 선거구에서 가장 많이 득표한 한 사람만 당선이 되는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의 경우 1등이 아닌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은 정치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인 수를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므로 지지율이 높지 않은 군소정당도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이를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는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와 민심에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의원은 어떻게 뽑나요?**

우선 각 정당들이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합니다. 유권자는 정당의 정책과 비례대표후보자들을 살펴보고 선호하는 정당에 투표합니다.

투표 후 각 정당이 득표한 비율을 기준으로 법에서 규정한 의석배분 방식에 따라 각 정당에 비례대표의원 의석수가 배정됩니다. 배정된 수만큼 각 정당의 후보자명부 순으로 비례대표의원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 CHECK

**재·보궐선거란?**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사망·당선무효 등으로 인하여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단,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도 실시)

**재선거**

- 후보자 또는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 또는 결정,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선거범죄로 당선무효된 때에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보궐선거**

- 당선인이 임기개시 후에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신분을 상실한 때에 그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뽑는 대표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국가의 대표

**대통령 [대한민국헌법 제66조, 제73조, 제74조]**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행정부의 수장으로 모든 행정권은 대통령에 속해 있으며, 조약의 체결·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권과 강화권, 대한민국 국군의 통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을 제·개정

**국회의원 [대한민국헌법 제41조]**

국회의원은 국가의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관한 법률을 만들거나 잘못된 법률을 고치고 정부의 예산이 잘 짜였는지 검토하는 등의 일을 수행합니다.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구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책 집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대한민국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집행합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시·도지사 / 자치구청장·시장·군수)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예산 검토

**지방의회의원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어 해당 지역 주민의 복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거나 고치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검토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광역자치의회와 기초자치의회에 각각 지역구 의회의원과 비례대표의회의원(시·도의원/자치구·시·군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정책 수립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은 각 광역자치단체(총 17개)의 교육에 관한 사무를 총괄합니다. 교육 관련 조례안의 작성, 예산안의 편성, 결산서의 작성, 교육규칙의 제정, 학교 기타 교육기관의 설치 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CHECK**

**선거별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는 연령**

- 대통령선거  
만 40세 이상
-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만 18세 이상

**여기서 잠깐!**

**후보자 말고 예비후보자가 있다고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후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후보자를 제대로 알리기에 이 기간은 실질적으로 그리 길지 않은데요. 현직에 있는 의원의 경우 평상시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 기회의 측면에서 정치신인과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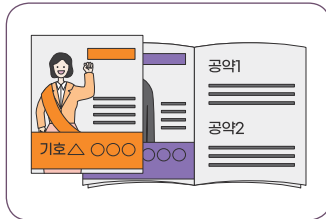
예비후보자제도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한 사람은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신인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어느 정도 보장하여 현직과 비현직 후보자 간 형평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 지역구사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90일
- 군의 지역구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선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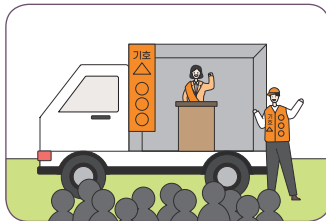
선거공보  
(세대별로  
우편 배달)



선거벽보  
(포스터)



거리 유세  
(공개장소  
연설·대담)



후보자  
토론회



**CHECK**

**선거공보란?**

선거에서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경력·정견·공약소속 정당의 정책 등을 게재한 인쇄물

**선거운동기간은?**

- 대통령선거: 22일
-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13일

'선거운동'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선거공보, 선거벽보, TV 토론회, 방송연설, 공개장소 연설, 명함 배부 등의 방법으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문자 메시지 발송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법적으로 정해진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상시나 선거일 당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이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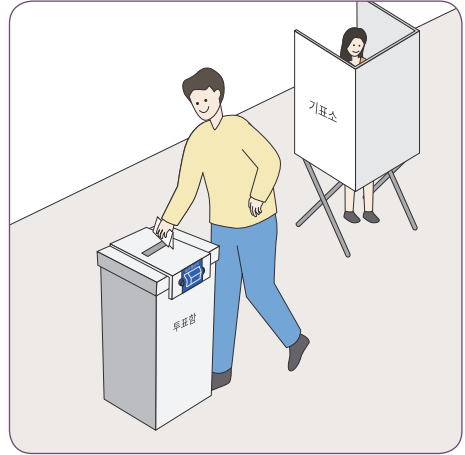
## CHECK

감염병 환자 등 격리자의 경우 투표는 선거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재·보궐선거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사전투표기간중에는 둘째날인 토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투표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해야 합니다.

선거 당일 투표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사전투표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금요일, 토요일 /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신체장애나 질병 등의 문제로 투표소에 직접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신고한 뒤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거소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개표

‘개표’는 투표가 끝난 후 투표함을 개표소에 옮긴 다음 시작합니다.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의 유·무효 판정을 하고 후보자나 정당별로 분류해 득표수를 집계해서 결과를 공표합니다.

## 당선인 결정

개표 결과가 확정되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정당에 대한 투표의 경우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 ‘당선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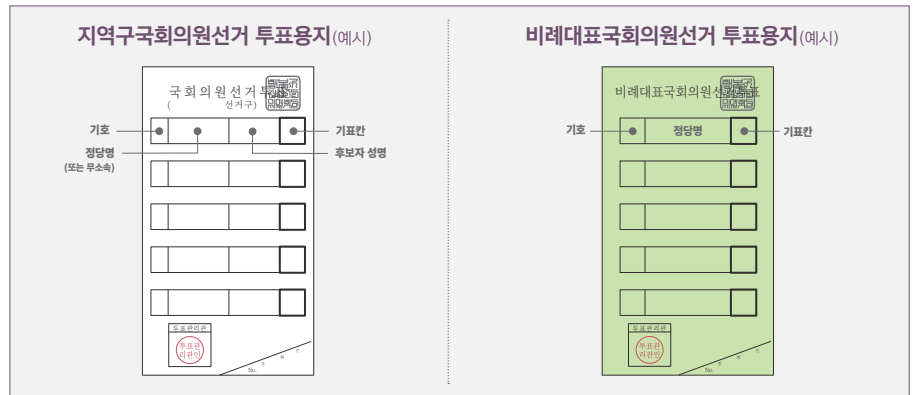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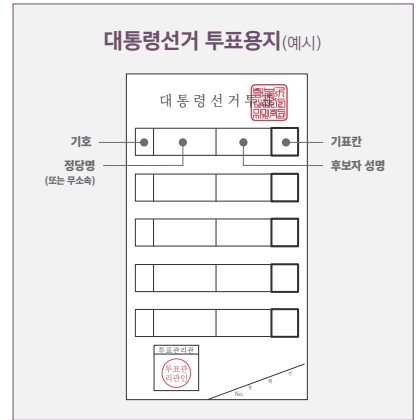
### 3. 알쏭달쏭 투표용지

**대통령선거**에서는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또는 무소속으로 나온 후보자 중 내가 선호하는 후보자 한 명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대통령선거를 비롯한 모든 선거의 투표용지는 각 정당칸 또는 후보자칸 사이에 여백을 두어 작성합니다.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한 장, 정당에 투표하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한 장 이렇게 색상이 다른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합니다.

지역구의원의 경우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표시),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합니다.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을 표시합니다.



**✓ CHECK**

**지방선거 투표 방법**

- 1차 투표용지 3장을 받아 투표
- 2차 투표용지 4장을 받아 투표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4장 교부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총선에는 교육의원선거가 있어 투표용지를 5장 받았으나, 2026. 6. 30. 후 교육의원이 폐지되어 4장 받게 됨.

**지방선거**에서는 원래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을 선출하므로 총 6장의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감을 같은 날에 선출하기 때문에 총 7장의 색상이 다른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다만, 투표용지가 많으면 혼동될 수 있으므로 1차로 투표용지 3장을 받아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2차로 투표용지 4장을 받아서 투표하게 됩니다.

1차 투표용지는 교육감, 시·도지사,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의 투표용지이고 2차 투표용지는 지역구 시·도 / 자치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 / 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CHECK**

**교육감선거 투표용지**

교육감선거는 투표용지나 선거벽보에 게재된 순서에 따라 특정 정당으로 착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순환배열식 교호(交互) 투표용지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기호 없이 가로로 후보자 이름을 나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육감선거 후보자는 정당의 추천을 받지 않으므로, 정당 추천을 받는 다른 선거의 투표용지와 구분하기 위하여 모양을 다르게 작성한 것입니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 한 선거구에 2~4명\*이 당선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원 정수가 2명인 선거구에 한 정당이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였다면 투표용지 기호칸에 '1-가, 1-나 / 2-가, 2-나' 등으로 표시합니다. 그렇다고 두 명의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내가 선택한 후보자 한 명에게 투표하면 됩니다.

\* 2022. 6. 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3~5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전국 11개 국회의원선거구)

**지방선거 투표용지(예시)**

1차 투표용지		2차 투표용지	
<p><b>교육감</b></p>		<p><b>지역구·시·도의의원</b></p>	<p><b>지역구·자치구·시·군의의원</b></p>
<p><b>시·도지사</b></p>	<p><b>자치구·시·군의 장</b></p>	<p><b>비례대표·시·도의의원</b></p>	<p><b>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의원</b></p>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광역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만 선출합니다.



**여기서 잠깐!**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무소속 후보자 순입니다.

정당의 게재순위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 순입니다.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국회에서의 다수의석 순으로 하며, 국회에 의석이 없는 정당이나 그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사이의 순위는 그 정당명의 가나다 순으로 합니다. 무소속 후보자 사이의 게재순위는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해 결정합니다.

참고로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후보자의 기호·정당명 및 성명을 지우지 않습니다.

## 4. 투표, 어렵지 않아요!

이제 투표소로 가볼까요? 우선 언제, 어디서 하는지 확실히 알고 가야겠죠. 투표는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재·보궐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투표소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의 학교나 주민센터 등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내 투표소의 위치는 선거일 전까지 선거공보와 함께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내 투표소 찾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투표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1. 투표 날짜를 미리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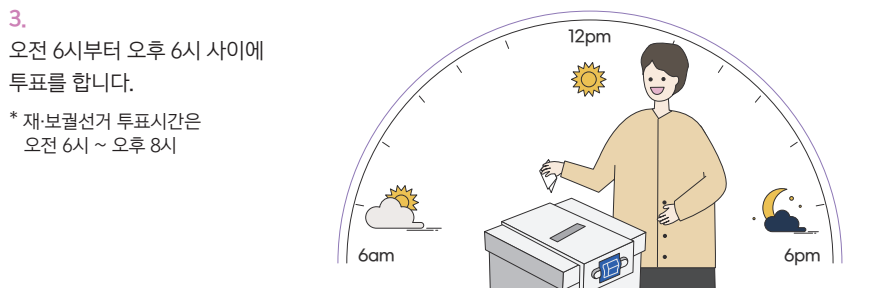


2. 투표소의 위치를 집으로 배달되는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합니다.



3.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투표를 합니다.

\* 재·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 ~ 오후 8시



투표소에 가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신분증입니다. 투표소에 들어가면 투표하기 전에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투표하거나 이미 투표를 한 사람이 중복투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여기서 잠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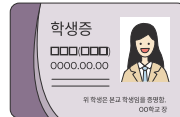
투표소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인정되는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으며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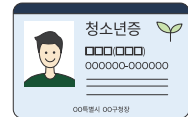
- 주민등록증, 학생증(사립학교 학생증 포함), 청소년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병적기록부, 생활기록부 등



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학생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만, 신분증을 촬영하거나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투표소까지 잘 찾아왔으니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법을 살펴볼게요. 우선 투표소에 입장해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름과 주소가 적힌 선거인명부에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어 본인 확인을 한 후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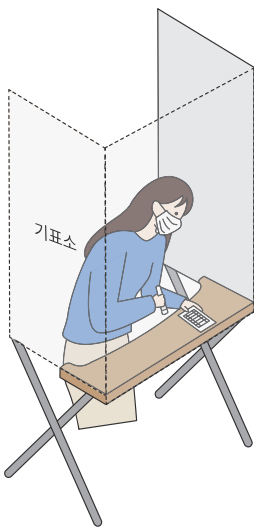
☑ CHECK

- 대통령선거: 투표용지 1장
-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2장(지역구국회의원, 비례대표국회의원)
- 지방선거: 투표용지 7장(교육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지역구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광역기초의원)
  - \* 예외: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4장(교육감, 광역자치단체장, 지역구광역의원, 비례대표광역의원)

보통 투표소에는 기표소가 여러 개 설치되어 있는데 차례를 기다려 기표소로 가면 됩니다. 만약 앞 사람이 기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면 약간 떨어져서 기다려주는 센스를 발휘해주면 좋겠죠!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다음 기표한 내용이 보이지 않게 투표지를 접어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 투표과정



투표소 안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친구나 부모님과 투표소에 함께 갔더라도 기표소에는 혼자 들어가서 기표해야 합니다. 다만,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투표소 안에서 큰 소리를 내는 등 다른 사람들의 투표에 방해가 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전국에 확산된 경우에는 마스크 쓰기, 손 위생 신경쓰기, 주변 사람과 간격 두기 등 방역수칙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투표소에는 투표과정을 진행하는 투표사무원 외에도 정당이나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투표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됩니다. 만일 투표소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투표참관인은 즉시 이의제기를 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투표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 과정을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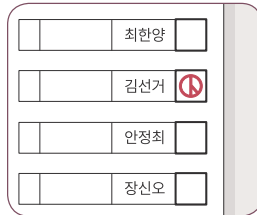
## 올바르게 투표하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도 내 의사가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투표를 했어도 올바르게 찍지 않거나 투표용지에 낙서를 하면 그 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투표 방법을 숙지하고 이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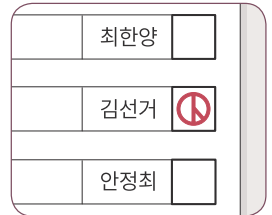
### 올바른 투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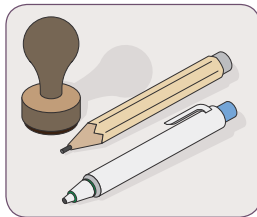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전용 도장으로 찍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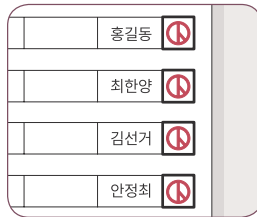
투표용지마다 투표도장을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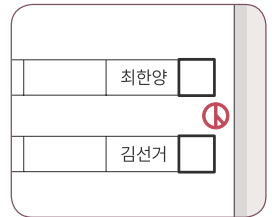
투표도장을 기표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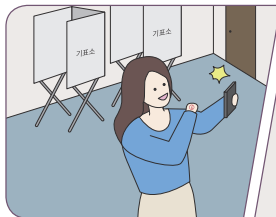
펜이나 다른 도장으로 표시하면 무효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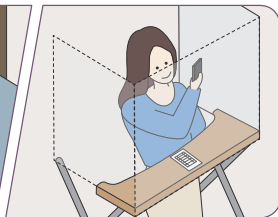
여러 후보자나 정당에 투표도장을 찍으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도장을 어느 기표칸에도 찍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



투표소 및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을 활용하세요)



몇 번 후보자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만, TV·라디오방송국과 일간신문사에서 출구조사를 할 경우에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점은 누군가가 투표소 앞에서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했는지를 물어보더라도 당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TV·라디오 방송국과 일간신문사는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50미터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를 찍었는지 묻는 질문 즉, 출구조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응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투표 마감시각까지는 출구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선거의 원칙

선거를 통해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고 선거 결과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선거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치러져야 합니다. 즉, 민주선거의 4대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 보통 선거** 국민은 누구나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성별, 인종, 교육, 언어, 재산,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대한 차별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평등 선거** 투표가치를 평등하게 취급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에게 동등하게 1인 1표의 투표권을 인정합니다(one man one vote, one vote one value).
- 직접 선거** 유권자는 다른 사람을 통하지 않고 직접 대표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 비밀 선거** 유권자가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했는지 알 수 없도록 비밀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투표인증샷’을 본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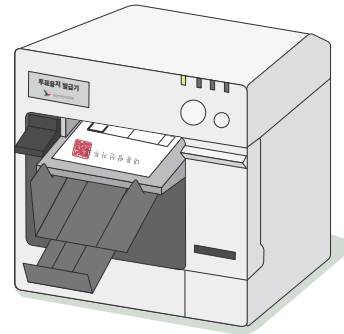
선거일투표소 또는 사전투표소 앞에서 투표인증 사진을 찍어 인터넷에 올릴 수 있습니다. 두 손가락으로 ‘V’를 나타내거나 엄지손가락으로 ‘최고’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유권자가 되는 여러분도 투표인증샷을 남겨 투표 참여의 뿌듯함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일에 투표하지 못한다면 사전투표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비교**

구분	사전투표	선거일투표
투표일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간	선거일 하루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우리 동네 개인별 지정투표소
선거인 구별	관내·관외선거인 구별	구별 없음
투표용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로 인쇄	인쇄소에서 미리 인쇄



투표용지 발급기 ▶

**관내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내에 주소 두고 있는 선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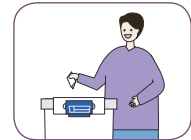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 수령



투표전용 도장으로 기표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투표소를 나감

**관외선거인 : 해당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밖에 주소 두고 있는 선거인**



신분증 제시 및 본인 확인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 (주소라벨 부착) 수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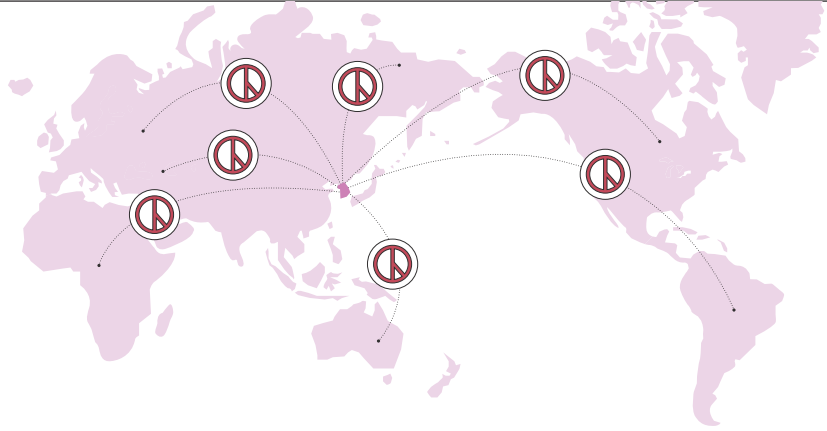


투표전용 도장으로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합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투표소를 나감

\*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관내·관외 구분 기준은 국회의원지역구



### 해외에서는 재외선거를!

외국으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에 살고 있어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http://ova.nec.go.kr>)에 접속하거나 우편·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해외의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 등을 직접 방문해서 미리 신고·신청을 하면 선거권을 보장해 주는 재외선거제도 덕분인데요.

투표는 해당 국가의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외선거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서만 가능합니다. 재외선거의 특성상 준비기간이 더 필요한 만큼 국내보다 일찍 투표를 시작하는데요. 재외투표소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 5. 개표와 당선인 결정

## 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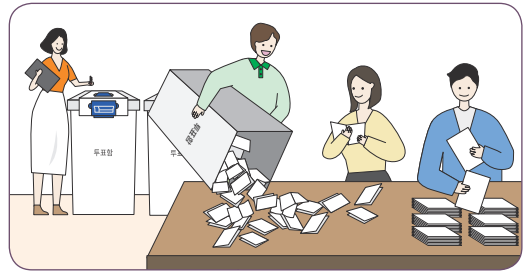
투표가 끝난 후 우리의 한 표 한 표는 어떻게 집계될까요? 이제 개표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 투입구 덮개를 닫고 봉쇄 잠금핀을 끼운 다음 특수봉인지를 부착합니다. 그리고 투표관리관과 정당·후보자별로 신고한 투표참관인 각 1명이 특수봉인지에 서명합니다. 이렇게 봉쇄·봉인된 투표함을 투표관리관,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합니다.

### 개표과정



#### 1. 접수부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개표소 입구에 있는 접수부에서 투표함 및 관련 서류들을 확인해서 접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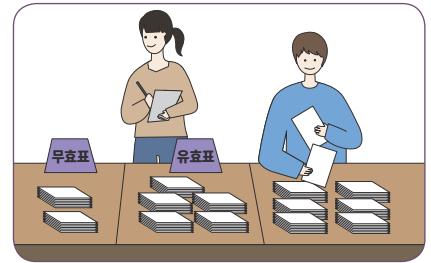
#### 2. 개함부

투표함의 봉쇄·봉인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 접수된 투표함을 열어 개함상에 투표지를 쏟습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지를 따로 구분합니다. 지방선거의 경우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의원선거, 비례대표의원선거 투표지를 따로 구분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정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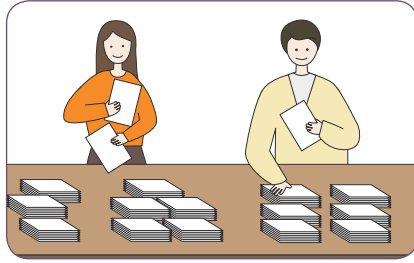
#### 3.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정리된 투표지는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투표지분류기라는 기계장치를 통해 후보자별·정당별로 분류해 보통 100매 단위로 묶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느 후보자에게 투표한 것인지 기계로 판독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재확인대상으로 따로 분류합니다.



#### 4. 심사·집계부

심사·집계부에서는 투표지분류기 운영부에서 1차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계수기를 이용해 매수를 세고 육안으로도 전부 확인합니다. 재확인대상 투표지의 경우 육안으로 분류·심사·집계해서 유효표와 무효표로 구분하고 유효표의 경우 후보자별·정당별로 분류해서 집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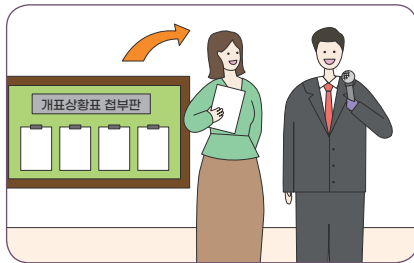
### 5. 개표상황표 확인식

집계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표상황표가 작성되면 개표상황표 확인식에서 계수의 정확성과 작성상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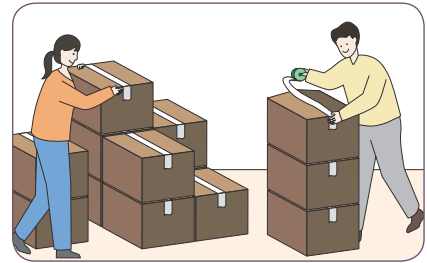
### 6. 위원 검열식

집계가 완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별·정당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 등을 최종적으로 검열하게 됩니다. 검열이 끝나면 위원장은 후보자별·정당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 7. 기록·보고식

개표상황을 입력 보고한 후 개표 결과를 언론사, 개표참관인에게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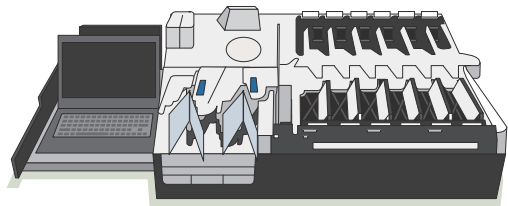


### 8. 정리부

개표가 마감되면 투표지는 투표구별로 구분하여 정리한 다음 봉인해서 일정기간 보관하게 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정당별로 분류해주는 기계장치로서 외부 통신망과는 단절하여 운영합니다.



이 장치에 투표지를 투입하면 투표지의 이미지를 스캔하고 누구에게 기표했는지 인식해 후보자별 또는 정당별로 지정해놓은 적재함에 분류합니다. 기표되지 않았거나 여러 군데 기표되어 있는 투표지의 경우 재확인대상 투표지로 분류되어 심사·집계부에서 육안으로 판정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1분당 약 300매의 투표지를 분류하므로 수작업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며 정확도가 높아 개표시간을 단축해 줍니다.

## 당선인 결정



개표소에서 개표가 끝나면 후보자별·정당별 득표수가 집계됩니다.

대통령선거의 경우 득표결과를 전국적으로 합산해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득표수가 같은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국회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지역구 의원은 해당 선거구 후보자 중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한 후보자가 당선됩니다. 만일 동점자가 나왔다면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비례대표의원은 정당별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고 해당 정당이 차지하게 된 의석수만큼 당선인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당선인은 각 정당이 작성했던 후보자명부 순으로 결정됩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정당별 득표결과를 전국적으로 합산하고, 비례대표광역의원의 경우 시도별로 합산하며, 비례대표기초의원의 경우 해당 자치구·시·군별로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법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의석을 배분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해당 시도에서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기초자치단체장과 지역구지방의회의원의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단, 지역구기초의원은 다수 득표자 중 의원정수(2~4명)에 이르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 ☑ CHECK

구분		당선인 결정	동점자 발생 시 당선인
대통령		유효투표의 다수 득표자	국회 공개회의에서 다수 득표자
지방자치단체장	광역		연장자
	기초		
교육감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원	광역	다수 득표자 중 의원 정수에 이르는 사람
		기초	
비례대표	국회의원		-
	지방의원	광역	
		기초	

## 정리하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공직선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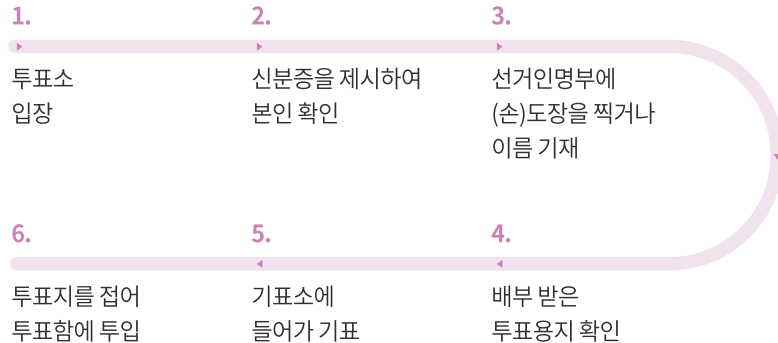
종류	선거일	선출 단위
대통령선거	2027. 3. 3.	전국
국회의원선거	2024. 4. 10.	지역구의원: 지역 선거구 비례대표의원: 전국
지방선거	2026. 6. 3.	광역자치단체장 / 비례대표광역의원: 시도 기초자치단체장 / 비례대표기초의원: 자치구·시·군 지역구광역의원 / 지역구기초의원: 지역 선거구
교육감선거	2026. 6. 3.	시·도

선거과정



투표과정

(선거일투표 기준)



올바른 투표방법

-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 전용 도장으로 찍는다.
- 하나의 후보자 또는 정당에 투표도장을 찍는다.
- 투표도장을 맨 오른쪽 기표칸에 찍는다.
- 투표소 및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지 않는다.
-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 개표과정

### 1. 투표함 이송

각 투표소에서  
개표소로  
투표함 이송

### 2. 접수부

투표함 및  
관계 서류  
확인·접수

### 3. 개함부

투표함의 이상 유무  
확인 후 투표함을 열어  
투표지 정리

### 5. 심사·집계부

분류된 투표지의 득표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재확인대상 투표지를  
육안으로 분류·심사·집계

### 4. 투표지분류기 운영부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해  
투표지 분류

### 6. 개표상황표 확인석

개표상황표의 정확성과  
작성상황 적정 여부 확인

### 7. 위원 검열석

후보자별·정당별  
득표수 검열 및  
위원장 공표

### 9. 투표지 보관

투표지 정리 후 보관

### 8. 기록·보고석

개표상황 보고 및 공표

## 확인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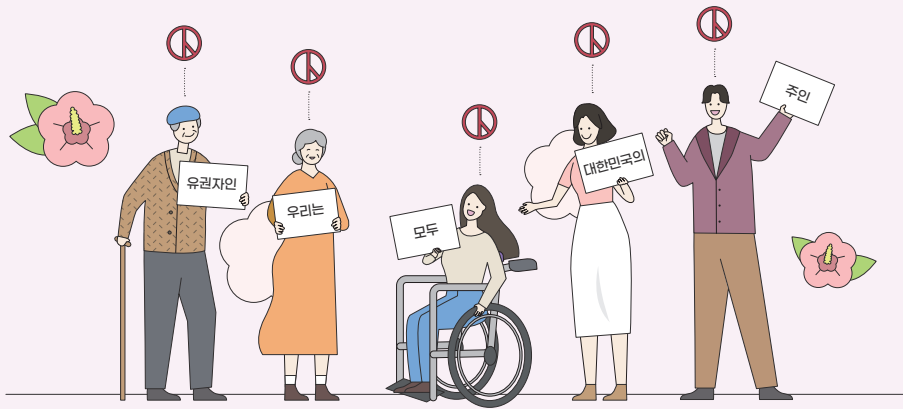
-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배부되는 7장의 투표용지는 모두 색상이 같다. (O/X)
-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별도의 신고없이 전국에 설치된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 투표소 안이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인증□을 찍어서는 안 된다.
- 투표지분류기로 판독되지 않은 투표지는 재확인대상으로 분류해 육안으로 판정한다. (O/X)

## 생각하기



- 1 — 투표와 개표절차를 법으로 자세하게 규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의원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3 — 여기에 소개된 선거 외에 우리의 생활 주변에는 어떤 선거들이 있을까요?

확인하기 정답 X, 사전, 샷, O







# 03

## 선거운동, 나도 할 수 있다!

---

- |                    |    |
|--------------------|----|
| 1. 선거운동이란?         | 42 |
| 2.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44 |
| 3.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   | 46 |
| 📌 마무리하기            | 5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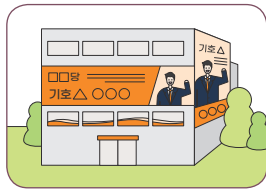
# 03

# 선거운동, 나도 할 수 있다!

## 1. 선거운동이란?

“기호 ○번! 저에게 투표해주세요!”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이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한 행위가 바로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의 목적은 ‘당선’입니다.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관심과 지지를 얻기 위해 선거벽보를 거리에 붙이고, 현수막을 내걸습니다. 명함을 나눠주고 유세차를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이 모두가 선거운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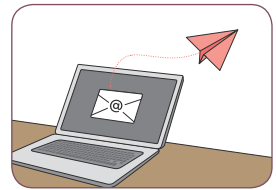
### 일반적인 선거운동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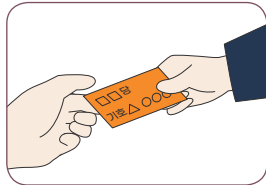
선거사무소 설치



전화·문자 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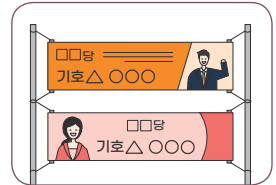
e-mail 보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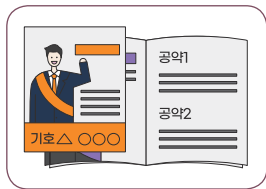
명함 배부



어깨띠 등 소품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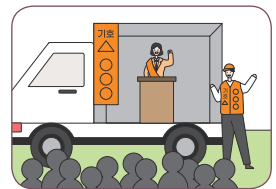
현수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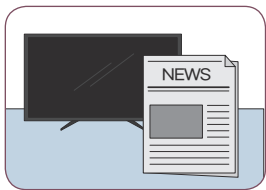
선거공보



선거벽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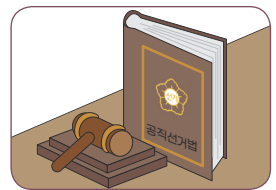
거리 유세(공개정소 연설·대담)



미디어 광고



TV토론



그 밖에 법이 허용하는 방법

##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은 당선을 위한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명심해야 할 점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선거에 관해 단순하게 내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선거운동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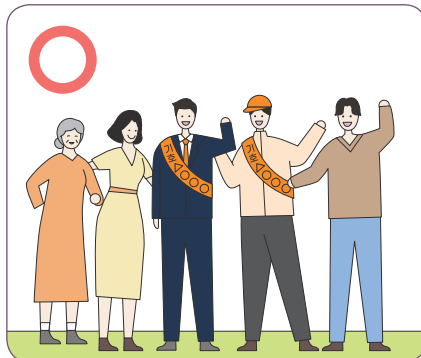


거짓사실 유포와 비방은 금지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정당이나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권자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정당이나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선거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권자 모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다만, 교사·공무원 등 법에 따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정당, 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뿐만 아니라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는 선거운동 가능



교사, 공무원 등은 선거운동 불가

## 2. 우리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 CHECK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거운동은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 18세 새내기 유권자가 되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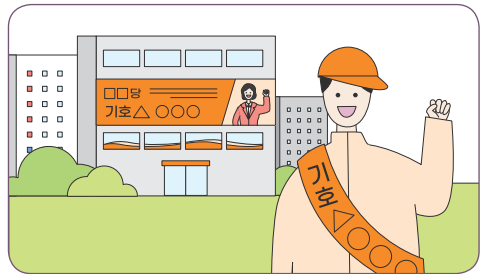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선거운동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선거일에 선거권이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후보자가 아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
-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연설을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선거운동은 법정 선거운동기간 중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정 선거운동기간에는 길거리에 선거벽보가 붙고 유세차량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 ☑ 여기서 잠깐!

#### 법정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대통령선거: 22일간
-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13일간

#### \* 선거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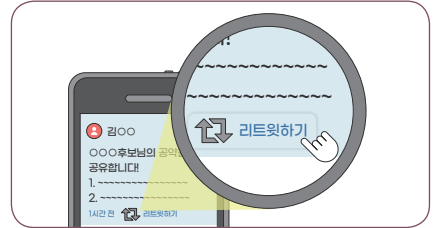
- 대통령선거: 23일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선거: 14일간(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예외적으로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과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선거일을 제외하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 할 수 있는  
선거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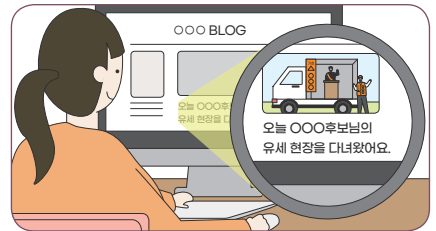
문자메시지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에 공유하여  
전달한다.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



SNS나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올린다.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나 지인을 만나서  
투표나 지지를 직접 부탁한다(선거일 제외).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직접 부탁한다(선거일 제외).

**CHECK**

(예비)후보자는 문자메시지 전송프로그램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횟수는 제한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선거운동 문자가 대량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송되면 선거가 무질서해지고 사람들이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비)후보자에 한해 전송 횟수를 정해 문자메시지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보호하는 동시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역시 보장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장장치를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의 집회에 참석해 다중을 대상으로 지지를 호소할 수 없으며, 전화를 이용한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 3.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

유권자라면 누구나 후보자, 정당, 정책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을 두는 것처럼, 선거에서도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만약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할 수 없는 선거운동, 즉, 불법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불법 선거운동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과 같은 주변인을 헐뜯거나 거짓사실을 퍼뜨리는 일입니다. 또한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게 되면 선거질서를 어지럽히고 선거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꽤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대 후보자 등에 대한 거짓사실을 공표하거나 악의적으로 비방하는 행위



특정 지역·지역인에 대한 악성댓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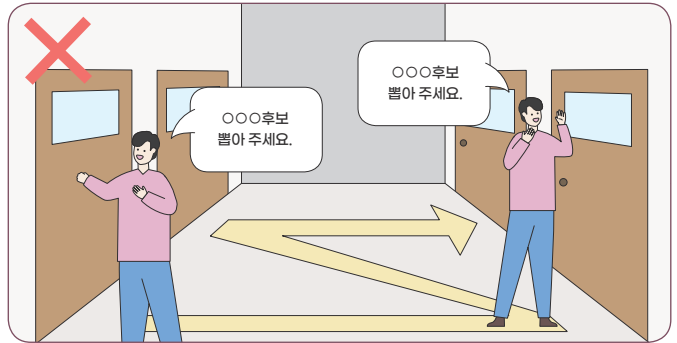


특정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가 당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교육장소나 학원 등을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에게 선거운동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가 아닌 곳(교육장소, 학원, 친구 집 등)에 연속해서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기관에서 2곳 이상의 교육장소를 돌아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교내 동아리 등 단체의 이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하는 것도 안 됩니다.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곳 이상의 교육장소를 방문하는 행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불법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수많은 여론조사들이 발표되는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sdc.go.kr>)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면 안 됩니다.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후보자나 정당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선거질서를 해치는 일이 됩니다. 이 경우 그 여론조사를 공표한 측도 처벌되지만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 사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SNS, 유튜브와 같은 뉴미디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메시지들을 만들어 보내거나 전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거짓사실이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전달하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쯤이야’, ‘친한 친구니까 괜찮겠지’하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뉴미디어의 특성상 내가 만든 또는 내가 전달한 잘못된 메시지들이 검잡을 수 없을 만큼 빨리 퍼질 수 있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죠? 긍정적인 내용보다 부정적인 내용이 훨씬 더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선거 분위기가 순식간에 훈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뉴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선거운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헷갈린다고요? 그렇다면 국번없이 '1390(선거 콜센터)'에 전화해서 미리 물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과태료와 포상금**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돈이나 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하는 것을 아시나요? 그것도 많게는 3천만 원까지!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의 가족,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 누구에게든 선거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거나 선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선거에 출마한 친구가 잘 부탁한다면서 간식을 사준 경우 만 원어치의 음식을 먹었다면 최고 50배인 5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한편, 선거법 위반 행위를 보거나 겪었을 때 이 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 내용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지긴 하지만 최고액이 무려 5억 원입니다. 그럼 어디 예,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국번없이 '1390'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물론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익명으로 보장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는 국번없이 1390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 원**

-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금품·음식물·서적·관광 기타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 원**

- 선거범죄를 보는 즉시 신고해 주세요.
- 신고·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합니다.

## 정리하기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일반적인 선거운동 방법**

- 선거사무소 설치
- 어깨띠 등 소품 이용
- 거리 유세
- 전화·문자 전송
- 현수막
- 미디어 광고
- e-mail 보내기
- 선거공보
- TV 토론
- 명함 배부
- 선거벽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 없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정당, 후보자, 후보자 가족, 선거사무원, 만 18세 이상의 유권자	교사, 공무원 등

**법정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한다.
- 후보자의 부탁을 받아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연설을 한다.

\* 법정 선거운동기간: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평상시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문자메시지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응원을 부탁한다.
-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SNS로 공유하거나 전달한다.
- 선거와 관련된 내용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다.
- SNS, 인터넷 게시판에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올린다.
- 공개된 장소에서 친구나 지인을 직접 만나서 투표나 지지를 부탁한다(선거일 제외).
- 전화로 정당과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다(선거일 제외).

**선거운동 시 주의할 점**

- 유권자는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한번에 2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동시에 보내서는 안 됨.
- (예비)후보자에 한해 정해진 횟수만큼 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음.
-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경우 확장장치를 사용하거나 공개된 장소의 집회에 참석해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
- 전화를 이용한 경우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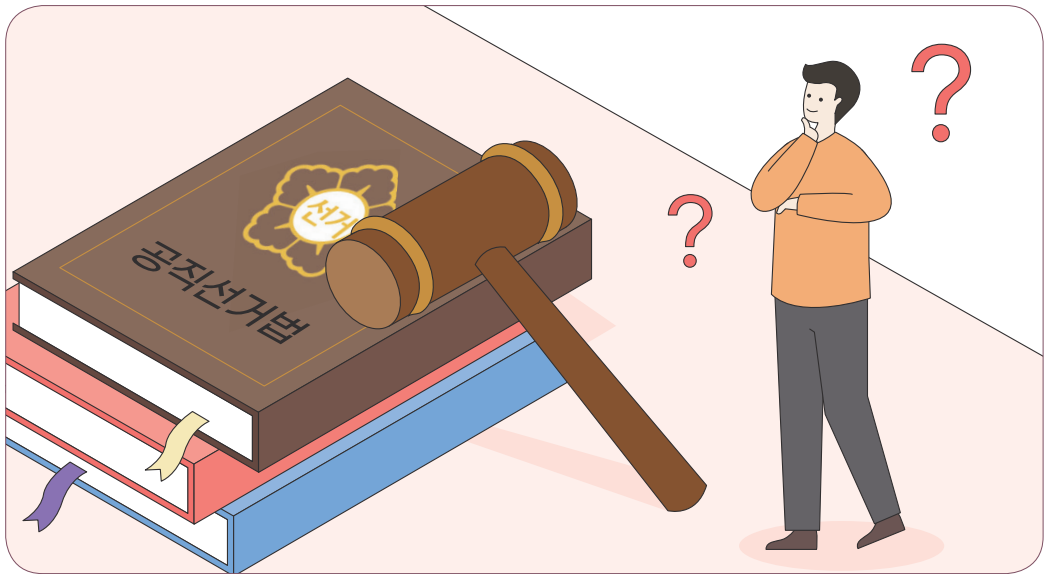
**해서는 안 되는 선거운동**

-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 거짓이나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내용을 공표하는 행위
-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비하·모욕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2곳 이상의 교육장소, 학원 등을 연속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게시하는 행위

## 확인하기

-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O/X)
-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도 □□□□에 포함된다.
- 유권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O/X)
-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선거운동은 법정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다. (O/X)
- 선거운동을 할 때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해선 안 된다.

## 생각하기



- 1 — 선거운동의 기간과 방법을 법으로 정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
- 2 — 현재의 선거제도 중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
- 3 —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청소년에게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
- 4 — 선거제도와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확인하기 정답 O, 선거운동, X, O, 비하



# 04

## 참여하는 유권자가 되다!

---

- |   |    |
|---|----|
| 1. 우리가 꿈꾸는 세상   | 54 |
| 2. 선거정보 알아보기  | 56 |
| 3. 미디어와 선거정보  | 59 |
| 4. 정당·후보자 분석하기  | 62 |
| 5.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선거문화  | 66 |
|  마무리하기 | 68 |

## 1. 우리가 꿈꾸는 세상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택한다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후보자를 당선시키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나의 선택은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살아갈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각각의 대표자들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권력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역을 운영하기 위해 여러 문제들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또한 정당을 통해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듣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에 대한 내 생각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올바르게 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꿈꾸는 세상이 없다면 나를 대변할 대표를 선택할 기준도, 대표에게 요구할 정책도, 대표의 정치활동에 대한 감시와 비판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내 생각을 만드는 일은 어떠한 가치를 우선시하는지 살펴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부분인지 기준을 세워보는 것이 좋겠죠.

좀 더 좁혀 볼까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각각의 영역에서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실현됩니다. 선거 때가 되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분야별로 중요 공약들을 제시합니다. 우리 동네를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과 맞닿은 지점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리는 세상입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투표권이 주어진다는 소식에 사람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주위의 어른들이 여러분의 선택에 간섭하려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생각을 강요하려고 한다면 “제 선택은 제가 할게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고 이끌어 갈, 이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고 ‘어른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말아야지’하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우리는 살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이 사회를 살아가는 다양한 지식과 방법들을 익혀 왔습니다. 이것을 ‘사회화’라고 부르죠. 여러분이 처음 국가와 지역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에 참여하게 되면 낯설고 어색한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주위의 어른들은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분들로 설정해 두세요. 특정한 사상이나 이념을, 특정한 정책과 평가를 강요한다면 그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그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들어가며 토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누구도 선택과 결정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민주시민이니깐요.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 여러 다른 생각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하면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주장들을 살피고 경청해야 합니다. 나와 다른 생각과 주장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무시하거나 폄하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정책과 공약에 대해 서로의 다양한 생각을 나누면서 나의 생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투표권을 갖는다는 의미를 넘어 생각의 범주를 ‘나’에서 ‘우리’로 확장해가는 것입니다. ”

## 2. 선거정보 알아보기

선거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만들고, 내가 지지하는 후보자·정당과 정책을 선택하려면 정보가 많을수록 좋겠죠?

하지만 투표에 처음 참여하는 새내기 유권자들은 선거정보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정보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살펴봅시다.

### 정당 홈페이지 둘러보기

정당은 현대 정치를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주체이며, 정권 획득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정권은 선거에서 국민 다수의 지지를 통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들은 국민들에게 자신들이 어떠한 이념과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정책을 중점적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당 홈페이지를 통해 정당의 소리를 들어봅시다!

### 정책·공약마당 사이트(<http://policy.nec.go.kr>) 검색하기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한눈에 살펴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정책과 공약을 쉽고 편하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정책·공약마당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망공약제안에서는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직접 제안하여 정당과 후보자들이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코너도 있으니 꼭 들어가 보세요!



정책과 공약을 찾아보는 것, 선거정보 습득의 기초이며 올바른 선택을 위한 방법입니다.

### TV토론 시청하기

바쁜 일상에서 우리가 가장 편하게 선거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TV 또는 휴대전화 등을 통해 정당과 후보자들의 토론을 시청하는 것이 아닐까요? 각 정당과 후보자별 정책을 일일이 살펴볼 수 없다면 TV토론을 통해서 그들의 주장을 비교해 보세요. 지면으로 보지 못하는 생생한 내용들을 어떤 논리와 생각으로 실현해 가려고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생방송을 보지 못했다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www.debates.go.kr](http://www.debates.go.kr))에서 다시보기를 하거나 유튜브 등을 통해 검색해 보는 것도 괜찮겠죠?





## 선거벽보 살펴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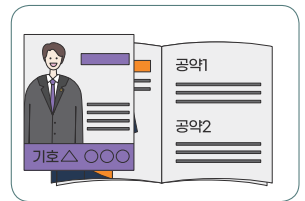
선거기간이 되면 길거리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후보자들의 선거벽보입니다.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 성명, 기호, 소속정당은 물론 경력, 구호, 핵심공약 등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 눈에 각 후보자와 정당을 비교해볼 수 있겠죠? 선거벽보에 적힌 공약들 속에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단,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는 등 훼손하면 안 됩니다. 눈과 마음으로만 보세요!

## 정당·후보자 선거공보 읽어보기

선거기간 동안 각 가정에는 정당·후보자의 홍보물인 선거공보가 우편으로 배달됩니다. 여기에는 선거벽보에 담긴 내용을 포함해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선거정보가 담겨있습니다. 후보자들이 세금은 잘 냈는지, 군대는 갔다 왔는지, 전과는 없는지 등 후보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그동안 살아온 발자취를 통해 대표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검증해 보는 것도 좋겠죠?

잠시 시간을 내어 주위의 친구들 또는 어른들과 함께 선거공보를 펼쳐놓고 이야기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사이버선거역사관(<http://museum.nec.go.kr>) 가상 선거체험

새내기 유권자가 되고 나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은 투표소에 들어가는 때가 아닐까요? 많이 듣고 배웠지만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의 선거체험관에서 가상으로 투표를 해볼 수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설명을 듣고 투표과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선거정보와 체험 코너가 있으니 들어가 보세요. 체험보다 좋은 학습은 없으니까요!

✔ 여기서 잠깐!

### 정당이란?

정당(political party)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합니다(정당법 제2조). 우리나라 헌법(제8조)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고,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에서 보조받습니다.

정당의 당원은 입당하는 시점에 만 16세 이상의 국민(「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이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및 학교 교원 등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사람은 당원이 될 수 없습니다. 당원 가입 신청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입당은 정당에서 허가해야 합니다. 반면 탈당은 탈당 신고서를 정당에 제출하는 것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만 16세 이상의 국민(「공직선거법」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이 정당에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선거벽보 훼손이 범죄라고요?

선거철이 되면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선거벽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것인데요. 이 선거벽보를 사람들이 장난으로, 혹은 보기 싫다는 이유로 훼손하거나 낙서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선거벽보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선거벽보를 훼손하지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의가 받아들여지면 올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3. 미디어와 선거정보

**✓ CHECK**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선거-정치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건강한 정치 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선거-정치 미디어리터러시 (media literacy)’라 합니다.

선거에서 미디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활용되기도 하지만, 후보자를 검증하고 선거와 관련된 잘못된 일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디어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각종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유튜브 등), 메타버스(Meta-Verse), 숏폼영상 뉴스 등 새로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선거에서도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뉴미디어는 편리한 정보 습득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할 위험도 매우 큼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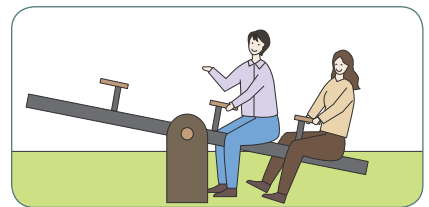
뉴미디어 공간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보만을 소비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일방적 편견을 갖게 될 가능성이 큼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 퍼지기 시작한 잘못된 정보는 건잡을 수 없이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그 잘못을 바로잡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고 현명하게 판단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시다.

**뉴미디어 활용의 부정적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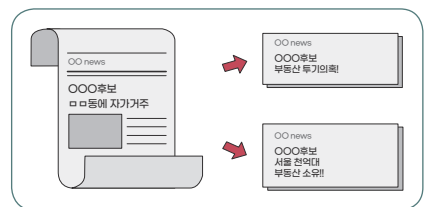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유권자가 정보를 편향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거짓사실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

## 허위조작정보와 팩트체크

### 허위조작정보의 부정적 영향

가짜뉴스(Fake News)는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사실을 뉴스의 형태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것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의 발달로 사진이나 영상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챗GPT나 미드저니(Midjourney)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만든 가짜 정보나 이미지 등을 뉴스로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허위조작정보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격적이거나 처음 듣는 내용을 접하게 되면 보도하는 언론사는 어디인지, 사진과 내용은 일치하는지, 주장의 출처와 근거는 무엇인지, 기자 이름은 정확한지 등을 살펴보면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팩트체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팩트체크(Fact Check) 보도

팩트체크 보도는 정치인이나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주요 인사들의 발언, 온라인에서 풍문으로 떠도는 이야기 등의 사실 여부를 검증해 판별하는 보도를 의미합니다.

팩트체크에서 검증하는 내용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후 사실만 검증합니다. 의견은 사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에 대한 각자의 판단이기 때문에 나와 다른 의견이라고 해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팩트체크를 할 때는 확인하고 싶은 사실에 대한 책이나 논문, 데이터를 찾아보거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나 학자들, 사회단체 등에서도 팩트체크를 실시하고 있는데 참과 거짓으로 명백하게 구분되기보다 부분적으로 거짓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인 경우 또는 반반이거나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팩트체크는 척도로 표시합니다.

각 언론사는 직접 팩트체크를 하면서 사실을 검증한 후 보도합니다. 의문이 생기거나 검증하고 싶은 사실이 있다면 혹시 먼저 팩트체크를 해놓은 언론사는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 미디어의 선거정보 활용

미디어에서는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치적 주장, 정책이나 공약뿐만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한 선거 판세, 유권자와 전문가의 평가 등 다양한 선거정보를 전달합니다. 유권자로서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보들을 합리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들을 몇 가지 살펴 봅시다.

#### CHECK

SNU팩트체크연구소 홈페이지(<https://factcheck.snu.ac.kr>)에서 여러 언론사의 팩트체크 기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디어의 성격 파악하기

언론사의 선거보도를 읽다 보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내용을 많이 보도하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내용을 많이 보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언론의 정파성이라고 부릅니다.



유튜브 채널과 같은 개인 미디어는 정파성을 드러내기가 더 쉽기 때문에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을 더 많이 전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정한 입장의 미디어만 이용하지 말고, 다양한 생각과 입장에 대해 열린 자세를 유지해야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선정적인 보도 제목은 내용도 확인하기

선거보도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공격적이고 강한 발언 등 선정적인 제목으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도의 제목만 보고는 사안의 맥락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을 꼼꼼히 읽고 전체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는 누구의 주장인지 살펴보기

선거 시기에는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보도되면 그 의혹을 누가 제기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 후보자나 익명의 제보자 주장만 있다면 단정적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당사자의 반론이나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특종', '단독'으로 후보자의 의혹을 보도했음에도 다른 언론사가 보도하지 않았다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아야겠죠?



##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나 판세 분석 보도 이해하기

선거시기에는 선거여론조사결과와 이를 토대로 판세를 분석하는 보도가 많습니다. 선거여론조사결과는 전체 유권자의 여론을 표본을 통해 추측한 결과지만 여론조사 결과와 투표 결과는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통계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습니다. 설문에 사용한 질문이나 조사방식에 따라서 여론조사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사실도 유념하면서 선거보도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도된 여론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nesdc.go.kr>)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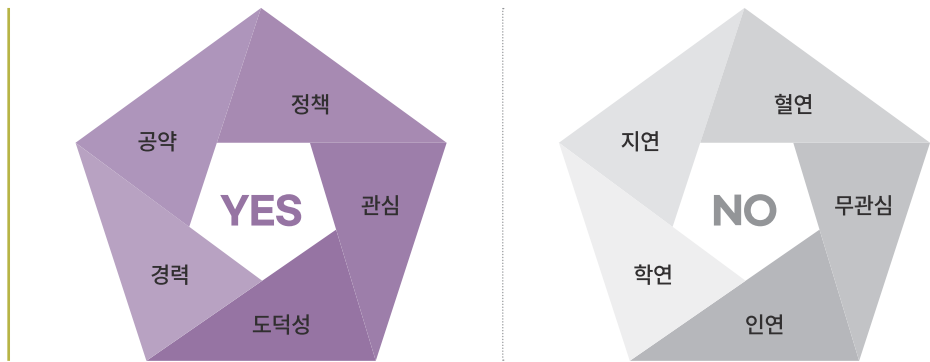
## 4. 정당 · 후보자 분석하기

선거에서 진정한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선택을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선택에 정답은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나은 대표자를 선택하기 위해 얼마나 따져보고 고민해서 결정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기준으로 선택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라서, 우리 고향 출신이라서, 같은 학교를 졸업해서 등의 이유로 그 후보자의 도덕성이 어떨지, 공약을 실현할 능력은 있는지 등을 따져보지 않고 선택한다면 올바른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 후에는 그 대표자가 잘못하다고 후회해 본들 소용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표자를 올바르게 선택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확인하고 고민해야 할까요?

올바른  
선택을 위한 고민



### 정당 · 후보자 정책 비교 방법

정당과 후보자를 선택하기 위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당도 많고 후보자도 많아서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체성과 이들이 주장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주는 구호(슬로건)를 살펴봅시다. 선거벽보나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유세차량을 통한 선거운동 등을 통해 정당이나 후보자가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구호가 있습니다. 특히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들과 차별화하려는 지점을 핵심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경제, 노동, 환경 등 어떤 정책과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핵심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정당들은 홈페이지, TV토론, 언론 등을 통해 핵심공약을 발표합니다. 각 후보자들도 선거공보나 선거벽보에 자신의 주요 공약들을 담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그냥 눈으로 읽어서는 장·단점이나 차이를 잘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공약에 다 관심을 기울일 수도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제시하는 10대 공약 또는 5대 공약, 3대 공약 이렇게 정해서 정리해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점 공약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각 언론사에서도 특별기사로 정리해서 보도하고 있어 찾아보기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후보자가 분야별로 핵심적으로 내세우는 정책이나 공약을 비교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분야가 교육정책이라면 각 정당이나 후보자가 몇 번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지, 그 내용과 실행방법에 있어서는 세부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를 분석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비교해볼 수 있고, 내가 바라는 세상과 가까운 공약을 담고 있는지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는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구체적인 발전계획도 함께 제시합니다. 이 경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잘 느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때마다 유권자에게 제공하는 공약지도 코너 등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 정당·후보자 정책비교 방법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별 10대 정책 찾아보기</li> <li>10대 정책 우선순위 비교하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후보자 공약 순위 매기기</li> <li>같은 공약의 차이점 찾아보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심 공약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하기</li> <li>토론 후 공약에 대한 순위 매기기</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분야별 10대 공약 찾아보기</li> <li>내가 원하는 공약 점수 매겨보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당 정책에 대한 언론 평가 기사 읽어보기</li> <li>정당·후보자의 구호(슬로건) 살펴보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이 단순 반복되지 않는지 살펴보기</li> </ul>                |



##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후보자들이 어떠한 능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올바른 대표자를 선택하기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선거통계시스템에 들어가 보세요. 재산신고액, 학력, 병역사항, 납세실적, 전과기록 유무, 입후보 경력 등 후보자 정보를 쉽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해왔는지, 어떤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전과 이력은 없는지, 납세 의무를 다하였는지 등 두루두루 검증해야 좋은 대표자를 뽑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성품도, 능력도 좋은 대표자가 필요하니까요.

### CHECK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http://info.nec.go.kr>)에서 다양한  
선거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보유한 현금, 채권, 부동산 등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신고한 재산을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 본인의 국내(최종)정규 학력과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 본인, 배우자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에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등)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 본인·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최근 5년간 납부 또는 체납한 소득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요.



후보자 본인의 전과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선거, 교육의원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된 경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기준

 <p>납세</p>	 <p>병역</p>	 <p>전과</p>
 <p>경력</p>	 <p>학력</p>	 <p>전문성</p>
 <p>공적</p>	 <p>사회공헌</p>	<p>여러분도 각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세요.</p>

## 5. 우리가 만들어 가는 선거문화

올바른 유권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투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른 선거문화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잘못된 선거문화와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과 희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선거권이 권리라면, 올바른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은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투표 참여는 좋은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는 가장 쉽고도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 여기서 잠깐!

#### 단체나 개인이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나요?

-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순수한 투표 참여 권유 및 홍보활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이나,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투표 참여 캠페인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권이 없는 친구들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를 개인적으로 만나 투표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눠도 되고 SNS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말이나 퍼포먼스를 해도 좋습니다.

투표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어 SNS 등에 올리는 등 선거일에 투표인증샷 놀이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서로 투표 참여를 독려하면서 선거를 놀이처럼 즐겁게 받아들일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듯 투표를 우리 모두의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리만의 아름다운 선거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표 참여를 권유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방문하는 일은 안 돼요.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도 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없습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방법**

**할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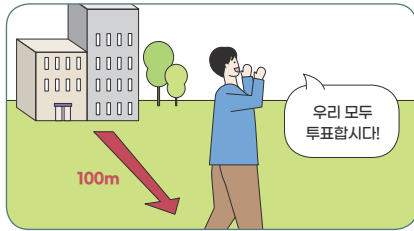


길거리에서 정당,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없이 투표참여 권유하기



투표소 앞에서 투표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

**할 수 없는 것**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투표 참여 권유하기



집집마다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

우리가 원하는 정책이나 공약을 직접 만들어 실현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희망하는 정책이나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전달해 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는 공약 제안 코너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가 선거문화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경쟁이 이루어지고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질서 있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선거 때가 되면 온갖 흑색선전과 비방, 악성 댓글로 얼룩지는 인터넷 사이트를 정화하는 캠페인이나 불법선거 근절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도 작지만 의미 있는 노력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선거를 통해 세상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문화선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 정리하기

'투표'의 의미	'내가 바라는 세상', '내가 살아갈 세상'을 선택하는 것								
투표할 정당과 후보자 선택하기	<p>내가 가장 우선시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살펴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을 살펴본다.</li> <li>▶ 내가 꿈꾸는 세상과 맞닿는 지점이 있는지 확인해 본다.</li> </ul>								
선거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 홈페이지</li> <li>• TV 토론</li> <li>• 선거벽보</li> <li>• 선거공보</li> <li>• 정책·공약마당 사이트(<a href="http://policy.nec.go.kr">http://policy.nec.go.kr</a>)</li> <li>• 사이버선거역사관 홈페이지(<a href="http://museum.nec.go.kr">http://museum.nec.go.kr</a>)</li> <li>•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a href="http://www.nec.go.kr">www.nec.go.kr</a>) 등</li> </ul>								
정당·후보자의 정책 비교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당·후보자의 선거구호(슬로건)를 살펴본다.</li> <li>• 핵심공약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li> <li>• 정당·후보자별, 분야별로 정책과 공약을 비교해본다.</li> <li>• 내가 원하는 공약 점수를 매겨 보거나 후보자 공약 순위를 매겨본다.</li> <li>• 관심 공약에 대해 친구들과 토론해 본다.</li> <li>• 언론의 평가 기사를 읽어본다.</li> <li>• 지난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이 단순 반복되지 않는지 살펴본다.</li> </ul>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살펴보는 기준	<table border="0"> <tr> <td><input type="checkbox"/> 납세</td> <td><input type="checkbox"/> 병역</td> <td><input type="checkbox"/> 전과</td> <td><input type="checkbox"/> 경력</td> </tr> <tr> <td><input type="checkbox"/> 학력</td> <td><input type="checkbox"/> 전문성</td> <td><input type="checkbox"/> 공적</td> <td><input type="checkbox"/> 사회공헌 등</td> </tr> </table>	<input type="checkbox"/> 납세	<input type="checkbox"/> 병역	<input type="checkbox"/> 전과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학력	<input type="checkbox"/>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공적	<input type="checkbox"/> 사회공헌 등
<input type="checkbox"/> 납세	<input type="checkbox"/> 병역	<input type="checkbox"/> 전과	<input type="checkbox"/> 경력						
<input type="checkbox"/> 학력	<input type="checkbox"/> 전문성	<input type="checkbox"/> 공적	<input type="checkbox"/> 사회공헌 등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p>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거통계시스템</li> <li>▶ 재산, 학력, 전과, 납세, 병역 등 확인 가능</li> </ul>								
뉴미디어 활용의 부정적 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가 왜곡되거나 거짓사실이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li> <li>• 유권자가 정보를 편향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li> <li>• 유권자가 잘못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li> <li>• 유권자가 특정 후보자에게 잘못된 편견을 갖게 될 수 있다.</li> </ul>								
미디어의 선거정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의 성격 파악하기</li> <li>• 선정적인 보도 제목은 내용도 확인하기</li> <li>• 후보자에 대한 의혹 보도는 누구의 주장인지 살펴보기</li> <li>• 선거여론조사 결과 보도나 판세 분석 보도 이해하기</li> </ul>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인들을 만나 투표 참여에 대한 대화를 나눈다.</li> <li>• SNS에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게시물(투표인증샷 등)을 올린다.</li> <li>• 공개 장소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말을 하거나 퍼포먼스를 펼친다.</li> </ul>								
투표 참여 권유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집마다 방문해서 권유하지 않는다.</li> <li>• 사전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하지 않는다.</li> </ul>								

# 마무리하기

## 확인하기

- 선거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가 꿈꾸는 세상'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 (O/X)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재산, 병역, 세금, 전과, 학력 등 후보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O/X)
- 뉴미디어를 통해 전해지는 정보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도 된다. (O/X)
- 선거 당일 투표 참여 권유 활동은 투표소로부터 □□□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다.

## 생각하기



- 1 —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어떤 것인가요?
- 2 — 후보자가 공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 3 — 선거가 끝나고 난 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확인하기 정답 O, O, X, 100

## 2024. 4. 10.(수)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주요사무일정

시행일정	요일	실시 사항	기 준 일	관계법조
'23. 10. 13부터 '24. 5. 10까지	금 금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후 30일까지	법§218④, 규§136의2
'23. 11. 15까지	수	인구수 등의 통보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법§4, §60의2①, 규§2①②
'23. 11. 12부터 '24. 2. 10까지	일 토	국외부재자 신고	선거일전 150일부터 60일까지	법§218의4 규§136의4
'23. 12. 2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공고·통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 공고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10일까지	법§122 규§26의2③, 규§51①②
'23. 12. 12부터	화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선거일 전 120일부터	법§60의2①
'24. 1. 11까지	목	각급선거관리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 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선거일전 90일까지	법§60②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선거일전 90일[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전 30일 : 3.11(월)]까지	법§53①②
1. 11부터 4. 10까지	목 수	의정활동 보고 금지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111
2. 10까지	토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선거일전 60일까지	법§218의5 규§136의4
2. 10부터 4. 10까지	토 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86②
2. 21부터 3. 1까지	수 금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선거일전 49일부터 40일까지	법§218의8, 9 규§136의8, 9
3. 11에	월	재외선거인명부 등 확정	선거일전 30일에	법§218의13①
3. 19부터 3. 23까지	화 토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일전 22일부터 5일 이내	법§37, 규§10
		거소·선상투표신고 및 거소·선상투표신고 인명부 작성		법§38, 규§11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법§65⑤
3. 21부터 3. 22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 9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법§49, 규§20
3. 27부터 4. 1까지	수 월	재외투표 (매일 오전 8시 ~ 오후 5시까지)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법§218의17, 규§136의15
3. 27까지	수	선거벽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5일까지	법§64②, 규§29④
3. 28	목	선거기간개시일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6일	법§33③
		선거공보 제출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7일까지	법§65⑥, 규§30⑤
3. 29까지	금	선거벽보 첩부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법§64②, 규§29②⑤
3. 29에	금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12일에	법§44①
3. 31까지	일	거소투표용지 발송 (선거공보, 안내문 동봉)	선거일전 10일까지	법§65⑥, 154①⑤, 규§77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법§65⑥, 153①, 규§76
4. 2부터 4. 5까지	화 금	선상투표	선거일전 8일부터 5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일시	법§158의3
4. 5부터 4. 6까지	금 토	사전투표(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법§155②, §158
4. 10	수	투 표 (오전 6시 ~ 오후 6시까지)	선 거 일	법 제10장
		개 표 (투표종료후 즉시)		법 제11장
4. 22까지	월	선거비용 보전청구	선거일후 10일까지(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	법§122의2①, 민법§161 규§51의3①
6. 9이내	일	선거비용 보전	선거일후 60일이내	법§122의2①, 규§51의3②



### 주의사항

청소년 선거교육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자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정확한 출처표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콘텐츠 수정 및 편집 금지
- 상업적 목적의 이용·배포 금지





# 대한민국 유권자가 되다!

청소년용